

예산총칙

제1조 (예산의 규모)

갈현효요양원 2024년 2차추경 총세입액은 1,079,270,000 원 이며, 총세출액은 1,079,270,000 원 이다.

제2조(예산의 내역)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. (관 또는 항 단위)

ㄱ.입소(이용)자부담금수입	194,113,340 원
ㄴ.보조금수입	43,118,660 원
ㄷ.후원금수입	0 원
ㄹ.요양급여수입	732,218,400 원
ㅁ.기타(차입금등)	109,819,600 원
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. (관 또는 항 단위)

ㄱ.사무비	654,470,898 원
ㄴ.재산조성비	58,200,000 원
ㄷ.사업비	226,492,120 원
ㄹ.기타(부채상환금등)	140,106,982 원

제3조(추가경정예산)

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확정할 수 있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

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집행)

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.

제6조(예비비)

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미만을 예비비로 계상한다.